



의안번호	제 2023 - 21 호
보 고 연 월 일	2023. 11. 10. (제12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전수식 개최	2
1. 양형위원 개임	2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3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4
1. 전문위원 개임	4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5
IV.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등 방문	7
1. 목적	7
2. 방문 개요	7
3. 세부 일정(안)	7
V. 2022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8
1. 개요	8
2. 수록 내용	8
3. 2022. 4. 27. ~ 2023.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8
4. 추진 일정	13
VI. 2023년도 국정감사 수감	14

1. 개요	14
2. 보고 사항	14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14

VII. 2023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33

1. 목적	33
2. 일시 및 장소	33
3. 참석 범위	33
4. 주제 발표	33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4

1. 문화체육관광부	34
2. 온라인청원(청원24) 접수 의견 보고	34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37
4.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 의견 보고	39
5. 민원 우편 접수 의견 보고	44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45
[별지2-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46
[별지2-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47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57차	2023. 10. 23. 15:00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 고 형량범위) 검토
	제157- 1차	2023. 10. 24. 17:30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II.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전수식 개최

1. 양형위원 개임

가. 개요

- 2023. 9. 6.자로 김선화 위원 해촉(사임)
- 2023. 9. 18.자로 정유미 위원 위촉

나. 양형위원 구성

[2023. 9. 18. 기준]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이 상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위원 (법관)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	2023. 4. 27.
	윤 승 은	법원도서관장	2023. 4. 27.
	유 영 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2023. 4. 27.
	신 숙 희 (상임위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 4. 27.
위원 (검사)	이 주 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 4. 27.
	정 유 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23. 9. 18.
위원 (변호사)	이 재 헌	변호사	2023. 4. 27.
	채 근 직	변호사	2023. 4. 27.
위원 (교수)	강 수 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김 혜 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 4. 27.
위원 (학식·경험)	손 관 수	KBS 보도본부장	2023. 4. 27.
	백 범 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023. 4. 27.

2. 신입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 일 시 : 2023. 9. 18.(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위촉장 전수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정유미 양형위원

※ 신입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입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Ⅲ.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전문위원 개임

가. 개요

- 2023. 9. 8.자로 박성훈 전문위원 해촉(임기 만료)
- 2023. 9. 9.자로 윤지영 전문위원 위촉
- 2023. 10. 4.자로 강선주 전문위원 해촉(사임)
- 2023. 10. 13.자로 정현주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나. 전문위원 구성

[2023. 10. 13.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3. 28.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2. 22.
	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2. 3. 2.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검찰	정현주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23. 10. 13.
	김한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2022. 2. 17.
변호사/ 군법무관	김현아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2023. 3. 7.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이민우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기획부장	군법무관	2023. 2. 25.
교수/ 전문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3. 4. 12.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윤지영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 9. 9.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7. 5.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가. 윤지영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 일시 : 2023. 9. 18.(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윤지영 전문위원

나. 정현주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 일 시 : 2023. 11. 10.(금) 16:00
- 장 소 :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정현주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2-1] 및 [별지2-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IV.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등 방문

1. 목적

-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양형위원회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
- 양형 데이터 수집·분석·관리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자료 수집, 양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수렴 방안 및 양형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자료 수집

2. 방문 개요

- 방 문 자 : 이상원 위원장, 이주형 위원, 강수진 위원, 운영지원단장
- 기 간 : 2023. 11. 14.(화) ~ 2023. 11. 19.(일) [4박 6일]
- 방문기관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미국 연방 대법원, 뉴욕주 킹스카운티 형사지방법원

3. 세부 일정(안)

일 시	방문기관	내 용
11. 14.(화)	이동	인천 출발 → 워싱턴DC 도착
11. 15.(수)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방문	기관방문
11. 16.(목)	미국 연방 대법원 방문	기관방문
11. 17.(금)	뉴욕주 킹스카운티 형사지방법원 방문	기관방문
11. 18.(토) ~ 11. 19.(일)	이동	뉴욕 출발 → 인천 도착

V. 2022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1. 개요

- 2023. 4. 24. 양형위원회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여 왔음

2. 수록 내용

- 2022. 4. 27. ~ 2023. 4. 26.까지의 제8기 후반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23년도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3. 2022. 4. 27. ~ 2023.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8회)

차 수	일 시	안 건
116차	2022. 5. 2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117차	2022. 7. 4.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
118차	2022. 8. 16.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분류)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분류)
119차	2022. 9. 19.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
120차	2022. 10. 21.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121차	2022. 12. 5.	▪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확정

차 수	일 시	안 건
122차	2023. 2. 13.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형종 선택의 기준,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확정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 제18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확정
123차	2023. 4. 24.	▪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의결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2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나. 전문위원 전체회의(7회)

차 수	일 시	안 건
147차	2022. 6. 20.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제출자료 · 이재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 검토” · 최재아, 김한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 검토”
148차	2022. 7. 25.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 제출자료 · 이재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 김한울,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의견” · 최형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 강선주,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유형분류 검토의견”
149차	2022. 9. 5.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권고 형량범위) 검토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권고 형량범위, 정

차 수	일 시	안 건
		보통신망 이용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유형분류 등) ○ 각 유형의 명칭 검토 - 제출자료 · 이재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권고 형량범위” · 김한울,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권고 형량범위 검토 의견” · 최형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등” · 강선주,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등 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등에 대한 검토 의견”
150차	2022. 10. 11.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 제출자료 · 최형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검토” · 강선주, 김한울,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51차	2022. 11. 21.	○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제출자료 · 이재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김한울,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최형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등” · 강선주,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의견”
152차	2023. 1. 16.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형종 선택 기준,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차 수	일 시	안 건
		· 최형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 강선주·김한울,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 최형준, “양형인자 등 정비 방안” · 강선주,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153차	2023. 4. 10.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제출자료 · 김용민,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김한울, “관세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최형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강선주,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최형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강선주, 김한울, “교통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최형준, “양형기준 정비결과 관계기관 의견 검토”

다. 양형연구회 8차 심포지엄 개최(2022. 6. 10.)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되는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산정의 기준을 모색하고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

견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

- 대주제 :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 소주제 :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 , 『벌금형 산정의 기준』

라.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2022. 11. 28.)

- 세계 주요 국가의 양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형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열어, 양형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양형 관련 국제적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됨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 양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형사사법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그 성과 및 과제를 논의함
 - 대주제 :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현황과 과제-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 소주제 :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 (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마.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2023. 3. 27.)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제122차 회의(2023. 2. 13.)에서 제18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의결하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2023. 3. 27.(월) 개최하였음(방청은 현장 방청 및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2) 주제 및 진행 경과

- 2022. 12. 5.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에서 의결된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2023. 2. 13. 제122차 회의

에서 의결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벌금형) 및 수정안(자유형)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현장에서 시민, 기자 등 약 50명이 방청하였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음

바.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4. 추진 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작성: 2023. 10. 말까지
- 견본 제작: 2023. 11. 초순
- 교정 작업: 2023. 11. 중순
- 인쇄 의뢰 및 제작: 2023. 11. 하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2023. 12. 중순

VI. 2023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 2023. 10. 10.(화) 10:00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양형위원회 주요업무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들의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에 답변

2. 보고 사항

- 양형위원회 일반현황
- 양형위원회 주요 업무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결과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경과
 - 양형정책 연구·심의
 -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자료집 발간
- 향후 주요 추진 업무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가. 국정감사 구두질의 및 답변

(1) 이탄희 위원

- [이탄희 위원 질의] 기습공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음. 2021년에 발생한 경남 산청의 펜션주인 살인사건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하던 분께서 2005년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아내와 함께 펜션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30대 남성이 혼자 찾아와서 아주 잔혹하게 70대 노인을 살해한 사건임.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0년

을 받았는데 2심 공판 직전에 유족 1명당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해서 4년 감형을 받았음. 그런데 감형을 받고 나서 6일 뒤에 1억 5,000만 원을 회수해 갔고 이 사건은 확정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실을 몰랐다고 함. 이 사건이 터져서 이게 ‘감형먹튀 공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공탁을 계속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 이후에 춘천사건이라든가, 인천사건이라든가, 이렇게 감형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사례들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그리고 지금 온라인 카페들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예 죄명을 특정해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이 사건에서 민사를 감안해서 3,000만 원 공탁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5,000만 원 공탁할 것이냐’,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 이런 카페들이 무수히 많고 그리고 이것을 범죄 피해자들도 계속 보고 있음.

춘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에서는 여자 아이가 한 명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부모님이 이것을 보고 “차라리 피해자도 돈을 내게 해 달라. 돈을 내면 형량을 올려줄 거냐.” 이런 말씀을 하였다고 함.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빠른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지금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거랑 달리 흉악범죄들도 늘고 있고, 온라인 환경 속에서 형량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관념이 퍼져나가고 있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공탁제도를 유지하실 것이면 재판에서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이것만이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감형사유에 공탁을 포함해서 ‘상당한

피해회복'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공탁은 양형인자 중 실질적 피해회복 또는 상당한 피해회복의 한 방법으로 인정됨.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회복은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진지한 노력의 결과 공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상당한 피해회복에 관해서도 단지 공탁을 했는가를 보는 것은 아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습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공탁에 대해서 엄격하게 살펴보도록 기준을 조정한 바 있음.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피서 공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음

(2) 권칠승 위원

- [권칠승 위원 질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자꾸 증가하고 있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간과 추행의 위반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이것으로 1심 판결을 받은 현황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58명이었음. 2022년에는 537명으로 대략 10배가량 늘었고 그런데 집행유예 숫자도, 절대숫자도 당연히 늘었고 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2018년도에는 39.2%였는데 2022년 54.6%이고, 2023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집행유예가 62.2%로 60% 돌파한 것이 올해 처음임. 당연히 역대 최고 수치인데 이렇게 집행유예가 늘어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양형기준이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지적되고 있었던 형사공탁특례제도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계에는 중한 범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약한 범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중한 범죄의 실행률을 보면, 오히려 실행이 상당히 많이 선고되는 것으로 확인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하나는 사건의 특성이 그런 것인가, 또 하나는 판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양형이 약해졌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성범죄 양형기준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 9기 양형위원회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손을 볼 생각이어서 양형기준이나 판사님들의 전체적인 양형감각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음. 아마 사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됨

(3) 김영배 위원

- [김영배 위원 질의] 최근 마약과 관련해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실행 선고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53%에서 최근에 48%로 떨어지고,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오히려 올라간다고 함. 그래서 이렇게 관대해지는 이유가 뭔지. 특히 최근에 현직 형사가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받고 나가서 운전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임. 관대한 처분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한다고 하고, 러시아도 15년 정도 징역을 한다고 하는데, ‘초범이라서’, ‘반성하니까’ 이런 이유로 양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양형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9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선정해서 지금 수정 중임. 특히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서 새로이 유형을 신설했고, 영업범을 신규 설정 범죄에 포함시켰음. 또한 대마 수출입에 대해 형량을 상향할 생각임. 그런데 마약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방지하는 사회시스템도 매우 중요함.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음

(4) 소병철 위원

- [소병철 위원 질의]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는 그 시작이 폭력범죄에서 시작됐다고 보임. 요즘 TV를 잘 보지 않는데도 어쩌다 TV를 보면 연속극이나 예능에서 ‘우리나라는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런 대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음. 중형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음.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실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형기준 준수율 통계 나온 건 2019년에 보면 90.7%로 법 기준처럼 운영되는데, 위원장님은 혹시 최근 준수율 통계가 있는지 여부를 물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최근 2년간 92% 내외로 알고 있음

- [소병철 위원 질의] 제가 알기로도 92%로 비슷한 수치임. 그러니까 거의 이게 법처럼 되는데, 제가 2020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형위원회 구성을 법원, 검찰 고위직 말고 다양하게 해 주십사 했고, 당시 김영란 위원장님도 양형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스

스로 인정하셨음. 그리고 뭔가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양형위원 중에 일반 분이 딱 세 분인 것 같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형위원회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률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 임명 또는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가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다소 법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법적으로 전혀 이해가 없으시면 기준설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양형위원이 7명인데 7명 모두가 법률가로 알고 있음

그런데 법률가의 의견만 듣다 보면 비법률가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그래서 저희들은 양형위원회 내부에도 비법률가가 있지만, 자문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비법률가로 위촉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있음

그리고 묻지마 범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묻지마 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묻지마 범죄는 많은 경우에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 현재 양형기준상 최대 상한이 무기징역 이상, 즉 사형까지 되도록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묻지마 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묻지마 범죄가 왜 일어나는가, 사회적인 원인, 묻지마 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사회안

전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묻지마 범죄는 범죄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원인이 되지 않은가 해서 그쪽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다양한 경로로 노력 중에 있음

(5) 조정훈 위원

- [조정훈 위원 질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20년 형량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저희와 상의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양형기준, 특히 감형·감경기준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였음.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감경하는 기준이 네 가지인 것은 알고 계실 텐데 반성, 범죄를 인정하거나, 초범이거나, 공탁이 해당됨.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감경요소가 소위 회복적 사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임. 특히 반성의 경우,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반성문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음.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글을 쓰고도 반성문으로 감형을 받았음. 좀 전에 이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탁 전문변호사가 소속된 솔루션 회사를 알고 있는지 물음.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공탁 등을 통해 합의에 준하는 감형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도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노리는 것임.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감경이 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지 물음.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 바꿀 생각이 없는지 물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은 전인격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양형인자를 하나로만 딱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했으며, 반성과 공탁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6) 전주혜 위원

○ [전주혜 위원 질의] 작년에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는 국회의 질타가 있었고 또 국민의 질타도 있었음. 보니까 9월 4일에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설정방안을 검토하셨고 그리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하기 위한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물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그러함

○ [전주혜 위원 질의]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함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림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저희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여 현재 유형 분류까지 마친 상태에 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스토킹범죄와 양형에 대해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음. 곧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음

나.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1) 김도읍 위원장

- [김도읍 위원장 서면 질의] 양형위원회가 올해 6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등의 양형기준을 독립된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착수했고, 양형기준안을 올해 12월 공개 예정, 최종 의결까지는 2024. 3. ~ 4.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 산업과 기업 보호가 절실한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양형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음. 기술 유출 사건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함. 특히, 기술 유출은 반드시 적발되고, 회복불능의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의 신속한 수정 필요성에 대하여 제9기 양형위원회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임기 중 상반기 과업으로 선정하여 다른 범죄군에 우선하여 수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수정에 앞서 개정 법률에 따른 양형 실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단에서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거쳐 양형기준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계별로 심의하고 있으나, 다양한 법률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법리적 쟁점도 많은 범죄군의 특성상 심의·검토되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 특히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정함에 있어 공청회,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의견 접수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양형기준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유념하여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박용진 위원

- [박용진 위원 서면 질의] 법관들은 대부분 범죄에서 양형기준 준수율이 8~90%에 육박함.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음. 따라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사회적 이슈인 병역면탈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다수임. 걸려도 처벌 없이 군대 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매우 악질적인 행동임. 또한,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이 300억 이상이 기본 5~8년을 권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횡령금액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현저히 낮음. 즉 횡령 기준에는 최대 금액을 상향하고 처벌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병역면탈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관들의 준

수율이 높은 수준인 만큼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양형기준으로 개선한다면 현명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짐. 횡령 사건과 병역면탈에 대해 양형기준을 제·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양형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영향기준에 대해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물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횡령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현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최대 구간이 3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스탬임플란트 사건 등 거액의 횡령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형량 구간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형량범위를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법률상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이 그대로임에도 특정 액수를 기준점으로 다시 양형구간을 나누어 형량을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실무례를 비롯한 폭넓은 조사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정해야 하고, 양형기준도 사회·경제 발전과 변화된 법 감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양형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현재 심의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관련 쟁점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면탈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하여 왔습니다.
- 제9기 양형위원회는 2023. 6. 전체회의에서 설정 및 수정대상 범죄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병역법위반(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도망·신체손상,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공익근무요원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등), 예비군법위반(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받지 아니한 경우 등), 군무이탈 등 범죄의 경우 양형편차나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양형기준의 설정에 대한 사회적, 실무적 요청이 크지 않은 등의 이유로 대상범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양형위원회도 병역법위반 범죄의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양형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최근의 병역법 개정,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에 따른 설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정감사 요구사항 및 답변

(1) 조정훈 위원

- [조정훈 위원 답변 요구사항] 부산 돌려차기남 피해자 사건과 관련하여, 반성, 자백, 초범, 공탁 같은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양형인자 존재 자체가 문제이며, 종합국감 때까지 양형 관련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행위자/기타 양형인자'가 양형기준에 규정된 근거]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① 범죄의 죄질, 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②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②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③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④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⑤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⑥ 범행 후의 정황, ⑦ 범죄 전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우리 형사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양형인자 뿐 아니라 ‘행위자’에 관한 인자 역시 양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에는 범죄행위의 특성에 따른 ‘행위인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자/기타 인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각 양형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비교법적으로도, 영국 영형기준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No Previous Convictions or No Relevant/Recent Convictions) 및 반성(Remorse)이 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고,¹⁾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경우 범죄 전력(Criminal History Category)에 따라 형량 구간이 구분되며, 자백(Acceptance of Responsibility)이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²⁾

1) 영국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

2)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https://www.ussc.gov>

[반성, 자백, 초범, 공탁이 양형인자인지 여부]

- ‘반성, 자백, 초범, 공탁’은 양형기준이 규정하는 양형인자가 아닙니다.
-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개별 범죄군별로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로 두고 있는데, 그 정의를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였다거나, 범행을 인정한다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질의에서 언급하신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되면서 ‘반성 없음’이 특별가중인자로 적용되었고, ‘진지한 반성’은 감경인자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행의 단순 부인이 아닌 ‘반성 없음’을 행위자의 특별가중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있고, 그 정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양형기준에서는 개별 범죄군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위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감경인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감경인자가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양형인자가 아닙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뇌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상당성’을 피해 회복의 핵심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 뿐 아니라 ‘상당한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양형 대책 관련]

-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감경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체 범죄군에 걸쳐 양형기준에 관련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충실한 양형심리를 유도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해당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정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2023. 11. 10.로 예정된 차회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이탄희 위원

- [이탄희 위원 답변 요구사항] 감형사유에 공탁 포함해서 상당한 피해회복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기준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감형인자가 있고, 공탁은 피해 회복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양형인자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공탁 관련 감형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해당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정비 방안 등을 2023. 11. 10.로 예정된 차회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 종합국감 서면질의 및 답변

(1) 박용진 위원

- [박용진 위원 서면질의] 여러 재판을 보면 동물학대 판결들이 들

쭉날쭉 선고가 내려진다 보임.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 중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권을 신경써야 함. 일관적이고 경각심을 주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함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제9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3. 4. 27. 출범하였는데, 2년의 임기 중 하반기(2024. 4. 27. ~ 2025. 4. 26.) 과업 중 하나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범죄 양형 사례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전문위원단 검토 등을 거쳐 2024. 6.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심의, 2024. 9.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심의, 2025. 1.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등을 거쳐 2025. 1.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이고, 2025. 2.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자문위원회의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치 등을 통해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를 검토,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4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2) 정점식 위원

- [정점식 위원 서면질의] 최근 5년 동물학대 건수는 증가한데 비해 처벌은 미약해 동물학대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도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양형실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방법으로 설정되는데, 신설되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에는 최근 증가하는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범죄(기술 유출 포함)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점식 위원 서면질의] 양형기준 대상 설정 범죄의 기준으로는 1) 양형기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2) 국민적 관심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를 우선적으로 제정함. 청원이 쏟아지던 2022년에 양형기준 설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형 선고 건수가 99건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양형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8기 양형위원회는 2021. 4. 27. 출범하였고, 출범 직후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과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로 아동학대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가 선정되었고, 그 외에 전체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범죄군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관심도, 범죄 발

생 빈도,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유형 판결 선고 건수가 99건에 불과한 점,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후 2022년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고, 이에 양형위원회는 2022. 9. 19.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제8기 임기 종료 전까지 현실적으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곤란하고, 당시 진행 중인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 현 기수 양형위원회(제9기)에서 설정을 추진하도록 인수·인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VII. 2023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1. 목적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하여 조사와 분석업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워크숍을 통하여 양형자료분석관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10. 27.(금) 13:30 ~ 10. 28.(토) 【1박 2일】
- 장 소 :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사냥메기길 56-56 법원연수원

3. 참석 범위(30명)

-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9명), 자료조사과(17명), 통계분석과(2명)

4. 주제 발표

주 제	발 표 자
경합범의 운영점검 방법에 대한 고찰	길평식 사무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사례별 고찰	배현경 분석관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문화체육관광부

가. 양형기준(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의견서 제출(2023. 10. 18)

- 저작권 침해범죄 양형기준 정비 추가 의견서[별첨1]

나. 주요 내용

- 상당한 사회적 피해를 주는 영리적·상습적 범죄의 강력 처벌 필요
- 경미한 침해와 상습적 범죄 구분 필요

2. 온라인 청원(청원24)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하여 마련된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 접수된 의견 보고
- 공개청원 처리 절차: 청원심의회 개최 요청(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통보(주관부서) → 청원심의회 의결 → 처리결과 통보(주관부서) → 청원공개결정 및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절차(30일, 처리부서) → 제출된 의견 취합 후 청원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 → 청원처리결과 통지(90일 내, 처리부서)

나. 결과통지 완료된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 요지
1	2023. 06. 15.	○ 재판과정에서 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부당함

2	2023. 06. 19.	○ 양형기준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양형인자(인정, 반성, 초범, 음주, 주취, 불우한 가정환경)를 폐지해야함
3	2023. 07. 18.	○ 피해자(유가족)가 거부한 형사공탁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에 반대함

○ 1번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기준에서는 개별 범죄군에서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로 두고 있는데, 그 정의를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인자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의견(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확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는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의 양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 형사공탁을 양형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란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형이 감경되나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첨2] 온라인 청원 국민의견 3부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11. 2.까지 총 3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8. 18.(1)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2	2023. 8. 22.(1)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3	2023. 8. 30.(1)	○양형기준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인 학생으로, 양형기준 설정에 사용하는 통계 방식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소속 양형자료분석관들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 기록이 보존된 지방 검찰청(지청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을 조사하여 해당 사건에 드러난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범죄유형별 선고형량분포를 파악합니다.
-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전산에 입력한 후 분석하는데, 각종 인자 빈도를 확인하고,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차이를 분석하며, 카이제곱 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실형·집행유예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인자의 연관성 및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신문 2023. 8. 14.자 기사 “[양형위의 하루] 범죄군 선정 → 양형 조사 → 기준안 의결 → 공청회 → 확정”(이용경, 한수현, 박수연 기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10. 24.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 요지
1	2023. 10. 18.(1)	○ 자신이 당한 여러 피해에 대한 호소

4.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 의견 보고

가.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10. 24.까지 총 22건)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8. 13. ~2023. 9. 6.(5)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2	2023. 8. 17.(1)	○성별에 따른 형량 차이에 대한 불만
3	2023. 8. 21. ~2023. 9. 14.(2)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4	2023. 8. 22.(1)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5	2023. 9. 4.(1)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6	2023. 9. 4.(1)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및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요청
7	2023. 9. 5.(1)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및 처벌 강화 요청
8	2023. 9. 18.(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9	2023. 9. 19.(1)	○스토킹범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10	2023. 10. 4.(1)	○스토킹범죄 강력 처벌 요청
11	2023. 10. 5.(1)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12	2023. 10. 6.(1)	○범죄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 요청
13	2023. 10. 6.(1)	○주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14	2023. 10. 10.(1)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청 및 처벌 강화 요청
15	2023. 10. 10.(2)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16	2023. 10. 11.(1)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형사재판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여

서는 안 되고, 양형위원회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4번, 5번, 8번, 11번, 13번, 1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및 특정 사건의 처벌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범죄의 처벌 강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처벌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9기 양형위원회 전반기(2023. 4. 27.부터 1년)에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성범죄에 대하여는 후반기(2024. 4. 27.부터 1년)에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귀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 등의 처벌강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12번, 15번 동일 민원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각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강력처벌 요청, 범죄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 요청,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10. 24. 까지 총 4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10. 20.(1)	○ 반성문으로 인한 감형 반대 의견
2	2023. 10. 23.(1)	○ 형사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2023. 10. 23.(1)	○ 촉범소년 제도 폐지 요청
4	2023. 10. 24.(1)	○ 공탁금 제도 폐지 건의

5. 민원 우편 접수 의견 보고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10. 24. 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3. 8. 31.(1)	○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 1] 신입 양형위원 프로필

 법률신문	성 명	정 유 미
	생년월일	1972. 8. 17.
	소 속	대검찰청
	직 위	공판송무부장(검사장)
학 력		
○ 1991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6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 200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3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 2005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0. 2.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 2012.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5. 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6.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검사	
○ 2018. 7.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2019. 8.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 2020. 9.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 2021. 7.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2022. 7.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2023. 9. 7.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별지 2-1] 신입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윤 지 영
	생년월일	1977. 9. 28.
	소 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학 력		
○ 1997.3.~2001.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학사) ○ 2001.9.~2004.8.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석사/형사법 전공) ○ 2005.9.~2009.8.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박사/형사법 전공) ○ 2014.11.~2015.2. 미국 하와이 주 대법원 연수 ○ 2023.7.~2023.10. 독일 하노버 대학 방문 연구		
주 요 경 력		
○ 2010~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9~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19~현재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2019~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 2019~현재 법무연수원 논문 심사위원 ○ 2019~현재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2019~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 2019~현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2019~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 2019~현재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 2019~현재 4차산업융합법학회 상임이사 ○ 2023~현재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비전입법정책포럼 자문위원 ○ 2019~2022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 ○ 2019~2020 한국일보 오피니언 칼럼필진		

[별지 2-2] 신입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정 현 주(鄭 現 姓)
	생년월일	1980. 2. 23.
	소 속	대검찰청
	직 위	양형정책관(부장검사)
학 력		
○ 1998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사법연수원 수료(36기)		
○ 2007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		
○ 2009 광주지검 순청지청 검사		
○ 2011. 2.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 2013. 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 2017. 8.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		
○ 2019. 8. 헌법재판소 파견		
○ 2021. 7.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부부장		
○ 2022. 7.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2023. 9.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